

10. 土地超過利得稅法施行規則制定

財務部令 第 1813 號 1990.3.17 公布

제 1 조 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토지초과이득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 조 (연부매수계약자의 납세의무) 법 제 4조제 4항 제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에 있어서는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날에 그 매수계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법 제 4조제 5항 및 제 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 3 조 (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통지등)
① 영 제 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신고서는 별지 제 1호서식과 같다.
② 영 제 3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는 별지 제 2호서식과 같다.
③ 영 제 3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통지서는 별지 제 3호서식과 같다.

제 4 조 (세액감면신청) 영 제 5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

지 제 4호서식과 같다.

제 5 조 (복수세무서 관할지역안의 토지에 대한 납세지 지정 및 통지) ① 영 제 6조제 1항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류 토지등의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4일까지 소관지방국세청장(소관지방국세청장이들이 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)에게 별지 제 5호서식의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영 제 6조제 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그 토지중 가장 넓은 면적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소관토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토지안에 그 토지와 관련된 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(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)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지정신청이 있거나 영 제 6조제 1항 후단의 규정에

해당하는 유휴토지등이 있음을 안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 납세지를 지정하여 별지 제 6호서식의 납세지지정통지서에 의하여 지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- 제 6조 (주소지 과세를 하는 경우의 납세지 지정 및 통지)** ①유휴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과세기간 종료일 후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·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②영 제 6조제 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지정통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8월 31일 까지 하여야 한다.
③영 제 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지정통지서는 별지 제 7호서식과 같다.
④유휴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영 제 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납세지로 지정된 때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지체없이 토지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 7조 (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) 영 제 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 194 조의 15제 1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영 제 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동일 구내에 있는 시설로서 공장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부대시설은 이를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영 제 11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(이하 “무허가건축물”이라 한다)을 제외한다.

- 제 8조 (연수원용 토지)** ①영 제 8조제 2항제 1호에서 “건축물의 면적”이라 함은 건축물(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)의 바닥면적을 말한다.
②영 제 8조제 2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조경시설·휴식시설 기타 연수생 등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·설비용 토지(운동장을 제외한다)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.
③영 제 8조제 2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시설의 수용정원은 강의실 기타 연수를 위한 필수시설의 최대 동시 수용인원으로 한다.
④영 제 8조제 2항제 2호에서 “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”이라 함은 10

제곱미터를 말한다.

⑤영 제 8 조제 2 항제 2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수원시설의 수용정원이 100인이상인 경우로서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운동장의 면적이 4,500제곱미터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면적을 4,500제곱미터로 본다.

⑥영 제 8 조제 2 항제 2 호에서 “운동장”이라 함은 연수생등의 옥외체육활동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.

제 9 조 (농지) ①법 제 8 조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·답 및 과수원으로 하며, 이에는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·퇴비사·양수장·지소·농로·수로용 토지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.

②영 제 12 조제 2 항제 4 호에서 “질병” 및 “고령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

1. 질병

발병일부터 6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

2. 고령

65세이상의 연령

③현역병(전투경찰순경·교정시설경비 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)인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영 제 12 조제 2 항제 4 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

어서 입영직전의 동거가족이 농지의 소재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농지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.

④영 제 12 조제 2 항제 4 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입증은 별지 제 8호서식의 질병등으로 인한 농지과세제외 신청서에 의하되,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4일까지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영 제 12 조제 2 항제 5 호후단의 규정에 의한 입증은 별지 제 9호서식의 천재·지변등으로 인한 농지과세제외신청서에 의하되,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4일까지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소관세무서장이 그 제출기한전에 동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이를 입증한 것으로 본다.

제 10 조 (목장용지) 법 제 8 조제 1 항제 6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표의 왼쪽란의 사육사업에 대하여는 영별표 2의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 중 다음 표의 오른쪽란의 사육사업에

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1. 말 · 노새 · 당 나귀 사육사업	한우 (육우) 사육사업
2. 친칠라 사육 사업	토끼 사육사업
3. 개 사육사업	돼지 양돈사업
4. 여우 사육사업	밍크 사육사업

제 11 조 (체육시설업용 토지) ① 영 제 15 조제 2 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영 제 15 조제 2 호나목에서 “재무부령이 정하는 율”이라 함은 다음의 율을 말한다.

1. 정구장용 토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4
2. 기타 체육시설용 토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

제 12 조 (주차장용 토지) ①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법 제 8 조제 1 항제 9 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 1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에서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의 연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.

② 영 제 16 조제 5 항후단에서 “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체주차시설”이라 함은 주차전용 건축물과 기계식 주차시설로서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그 시

설 연면적 (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)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차시설을 말한다.

제 13 조 (광업용 토지) 영 제 18 조에서 “재무부령이 정하는 면적”이라 함은 다음에 규정하는 면적을 말한다.

1. 금속광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
2. 비금속광의 경우에는 60만제곱미터 (석회석 광의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)

제 14 조 (일반 골프장업등의 수입금액기준) 영 제 19 조제 1 항단서에서 “재무부령이 정하는 율”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.

제 15 조 (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 나지의 범위) ① 영 제 21 조제 1 항제 1 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역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한다.

② 1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그 면적이 264제곱미터 (특별시 및 직할시의 지역에 있어서는 198제곱미터) 이상인 토지에 있어서 그중 264제곱미터 (특별시 및 직할시의 지역에 있어서는 198제곱미터)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영 제 21 조제 1 항제 1 호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.

③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 가구의 구성원중 2인이 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영 제 21 조제 1 항제 1 호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. 이 경우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하고,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.

1. 가구주

2. 가구주의 배우자

3. 연장자

④영 제 21 조제 1 항제 1 호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4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별지 제 10호서식의 무주택 가구소유나지 과세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휴양시설업용 토지) ①영 제 21 조제 1 항제 5 호라목에서 “휴양시설업용 토지”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 휴양업·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(스키장·온천장·수영장용 토지를 제외한다)를 말한다.

②영 제 21 조제 1 항제 5 호라목에서 “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.

1.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
2.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= (건물연면적 +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) ÷ 150제곱미터 × 13.75 제곱미터 × 4
3. 기타 용도의 건물등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기타 용도 토지의 기준면적 = (건물 바닥면적 +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) × 10

제 17 조 (유사한 토지) 영 제 21 조제 1 항제 5 호마목에서 “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

1.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청소년시설용 토지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설비·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그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부분
2. 종업원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설비·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그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부분
3. 발전소 또는 송전·변전시설의 부속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

는 토지

- 가.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외의 토지(동법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경계구역밖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)
- 나.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자가 소유하는 경계구역밖에 있는 토지

제 18조 (기타 수입금액기준이 적용되는 토지)

① 영 제 21 조제 2 항에서 “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”라 함은 토관제조업용 토지, 블록·석물·토판·벽돌·콘크리트제품·옹기·철근·비철금속·플라스틱파이프·골재·조경작물·화훼·분재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, 경마장운영업용 토지와 휴양시설업용 토지를 말한다.

② 영 제 21 조제 3 항에서 “재무부령이 정하는 율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율을 말한다.

1. 블록·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

100 분의 20

2.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

100 분의 7

3.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와 자동차운전·자동차정비·중장비운전·중장비정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

100 분 10

4.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

100 분의 7

5. 블록·석물·토판·벽돌·콘크리트제품·옹기·철근·비철금속·플라스틱파이프·골재·조경작물·화훼·분재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

100 분의 10

6. 경마장운영업용 토지

100 분의 10

7. 휴양시설업용 토지

100 분의 10

제 19조 (공사완성도의 기준)

영 제 22 조단서에서 규정하는 공사완성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09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0조 (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)

① 영 제 23 조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의 토지로 한다. 다만,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되, 이 경우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영 제 2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1.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한 토지로서 그 허가서 또는 신고서상의 건축물 바닥

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 8 조제 1 항제 4 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(법인소유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신고서상의 건축물 바닥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9조 제 3 항제 2 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) 이내의 토지

2.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건축물신축 계획서상의 건축물 바닥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제 1 호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

② 영 제 23 조제 7 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임야로 한다. 다만,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동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상 그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본다.

제 21 조 (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)

영 제 24 조제 2 호에서 “과세시가표준액”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 조의 9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.

제 22 조 (총수입금액의 적용기준) ① 영 제 25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것으로 한다.

1.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총수입금액
2. 과세기간중 최종 2년(농지에 있어서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농업경영을 하지 못한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중 그 연도를 제외한 연도를 말한다)간의 평균 총수입금액

② 총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지상건축물·시설물등과 기타 토지 및 지상건축물·시설물등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어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토지 및 지상건축물·시설물등에 관련된 총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.

당해 토지 및 지상건축물·시설물등에 관련된 총수입금액 = [총수입금액] ×
[당해 토지의 가액]

[총수입금액이 관련된 토지의 총가액]

제 23 조 (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)

영 제 28 조제 2 항에서 “제품의 원료”라 함은 제품을 형성하는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 197조제 4호에 규정된 특수작물을 말한다.

제 24 조 (법인소유임야) ① 영 제 28 조제 1 항에서 “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

금액 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.

②법 제 9조제 3항제 4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야중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임야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로서 그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영 제 27조제 3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된 임야로 한다.

제 25 조 (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할 지가) ①영 제 3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또는 비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의 종료일 또는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. 다만, 그 기간의 종료일 또는 개시일의 전·후 1월이내에 고시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.

당해 일의 지가=직전에 고시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+ { (직후에 고시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-직전에 고시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) × [직전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고시기준일부터 당해 일까지의 월수] }

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서 월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단수는 이를 반올림한다.

제 26 조 (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통지 및

고지전 심사청구) ①영 제 3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 이득세예정통지서는 별지 제 11호서식과 같다.

②영 제 3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전심사청구서는 별지 제 12호서식과 같다.

③영 제 38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소관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당해 세무서의 과장 3인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조세 및 토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.

④영 제 38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전심사결정통지서는 별지 제 13호서식과 같다.

제 27 조 (과세 표준과 세액의 신고) ①영 제 39조제 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 14호서식과 같다.

②영 제 39조제 1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는 별지 제 15호서식의 전·후소유자 토지초과이득배분계산서에 의한다.

③영 제 39조제 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는 별지 제 16호서식의 비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등명세서에 의한다.

④영 제 39조제 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는 별지 제 17호서식의 개량

비 등명세서에 의한다.

⑤영 제 39 조제 1 항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필지별과세표준계산명세서는 별지 제 18 호서식과 같다.

제 28 조 (결정통지서) 영 제 40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파이득세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 19 호서식과 같다.

제 29 조 (수시부과) ①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유 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②영 제 3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정 상지가상승율이 고시되기 전에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그 토지초파이득을 계산한다.

토지초파이득=(당해 과세기간중 최초 2년간의 지가상승액-최초 2년간의 정 상지가상승분)×3/2

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시부과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 이를 공제한다. 이 경우 이미 납 부한 수시부과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 급한다.

제 30 조 (가산세) 법 제 19 조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일부 연도의 보유토지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

여 그 가산세를 계산한다.

가산세=당해 납부세액×10/100 ×

보유토지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횟수

보유토지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횟수

제 31 조 (분납신청서등) ①영 제 4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 20 호서식과 같다.

②영 제 4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 21 호서식의 분납허가서에 의한다.

제 32 조 (물납) ①영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 22 호서식과 같다.

②영 제 4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 23 호서식의 물납허가서에 의한다.

제 33 조 (매각의뢰) ①영 제 4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의뢰신청서는 별지 제 24 호서식과 같다.

②법 제 22 조제 3 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 25 서식의 유 휴 토지등매각의뢰서를 성업공사에 송부하고, 그 사실을 별지 제 26 호서식의 유 휴 토지등매각의뢰통지서에 의하여 그 소유자와 그 토지에 관하여 전세권·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성업공사가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의뢰를 받은 토

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공개입찰 또는 경매방식에 의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.

④ 영 제 44 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비용은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 45 조의 6 제 1 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⑤ 제 4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별 매각금액 또는 건별 매각예정금액이 1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10 억원으로 본다.

⑥ 법 제 22 조제 3 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의뢰받은 토지의 매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성업공사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.

제 34 조 (매수) ①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 22 조제 3 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영 제 44 조제 3 항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를 매수자로 지정하고 이를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로 지정된 자 또는 당해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정부기관은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
제 35 조 (보유토지명세서등) ① 영 제 4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토지명세

서는 별지 제 27 호서식과 같다.

체육시설	기준면적
자동차	써킷트길이(미터)÷1,000
경륜장	× 165,000 제곱미터
승마장	마장면적 × 10
수영장	수용정원 × 10 제곱미터
정구장	코트면수 × 650 제곱미터
골프연습장	{ 타석에서 그물까지의 최장 직선거리(미터) × 4 미터 × 지평면에 있는 타석수 } + (총타석수 × 10 제곱미터) 링크면적 × 3
롤러스케이트장	

나. 옥내에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

기준면적=건축물 바닥면적×영 별 표 1에 규정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

2. 적용요령

가.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면적을 기준면적에 추가한다.

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= 수 용정원(관람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정원을 포함한다)×10/100 × 13.75 제곱미터 × 2

나. 종합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당해 각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합계한 면적으로 한다.

〔별표 2〕

청소년시설용 토지의 기준(제17조제1호 관련)

청소년 시설	설비 · 시설 기준	면적기준
야영장 심신수련장	야영지, 긴급대피용 강당, 취사장, 관리사무실 강당, 숙소, 운동장, 식당, 관리사무실, 극 기 훈련시설	수용정원 × 200 제 곱미터 "
자연학습원	강당, 숙소, 식당, 운동 장, 동물원 또는 박재실 식물원 또는 식물표본실 자연관찰로, 관리사무실	"

〔별표 3〕

예비군훈련장용토지의 기준(제17조제2호 관련)

1. 면적기준

가. 기준면적

(단위 : 제곱미터)

훈련 장 사설 인원	부대 편성 인원	중대 · 대대	대대 · 연대	연대	여단	용도
		800명 이하	800명 ~ 2,400명	2,401명 ~ 5,000명	5,001명 이상	
전술 교육장	15,000	30,000	30,000	45,000		철조망 · 장 애물 및 총 검술교육시 설을 갖춘 각개전투 · 분대전술 · 수색경찰 교육장소

사격술 예비 훈련장	3,600	7,200	10,800	10,800	사격술의 예 비 훈련장소
사격장	1,650	2,475	3,300	3,300	사격장소
기초 훈련장	2,500	5,000	7,500	7,500	체육훈련 · 총검술 · 소 화기 · 기계 훈련장소
계	22,750	44,675	51,600	66,600	

나. 적용요령

사격술예비훈련장 · 사격장 및 기초 훈련장의 경우에는 전술교육장(사격술예비훈련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장 소유자의 다른 평지 또는 운동장을 포함한다)에서 그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면적을 기준면적에 포함한다.

2. 부대설비 및 시설의 기준

설비 · 시설별	설비 · 시설 기준	적용 대상
교육 보조 재료 창고	교재, 교육용 장비 기타 교 육용 소모품을 갖춘 연면적 66 제곱미터 이상의 창고	대대급 이상 훈련장
강당	영화 또는 스크린 상영시설 을 갖춘 연면적 298 제곱미터 (중대급 훈련장의 경우에는 185 제곱미터) 이상의 강당	중대급 이상 훈련장
간이 목욕장 시설	50명 이상이 동시에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목욕장	대대급 이상 훈련장

구 분	기준율
○ 블록·석물 및 토관제조 업용 토지	100분의 20
○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	100분의 7
○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와 자동차운전등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	100분의 10
○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 하는 학원용 토지	100분의 7
○ 블록·석물·토관등의 도매 업 및 소매업용 토지	100분의 10
○ 경마장운영업용 토지	100분의 10
○ 휴양시설업용 토지	100분의 10

- 다. 정상지가상승율이 고시되기 전에 수
시부과를 하는 경우 그 토지초과이
득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
록 함(영 제 29 조제 2 항).
토지초과이득 = (당해 과세기간중
최초 2년간의 지가상승액 - 최초
2년간의 정상지 가상승분) × 3/2
라. 기타 토지초과이득세의 징수에 필
요한 관련 서식을 정함(영 별지제
1호서식 내지 별지 제 28호서식).

〈재무부 제공〉

주택 정보

정 기 구 독

- 주택정보의 정기구독 기간은 1년입니다.
- 주택정보의 1년 정기구독료는 35,000원입니다.
- 주택정보 정기구독을 신청하려면
 - ①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지로용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지로카드에 지로번호, 받으실분의 성명, 주소,
전화번호, 구독기간을 명확히 기입해 주십시오
지로번호 : 7516377
 - ②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우편대체구좌를
이용하셔도 됩니다.
우편대체구좌 : 012930-31-2636892
 - ③ 우편소액환을 이용하셔도 됩니다.
- 정기구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
547-1835, 546-4902